

구미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폐기물처리시설)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

1. 제안이유

구미시 산동면 백현리 일원에 구미국가산업단지 및 구미2차도시세력권내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 및 지정 폐기물의 선진국형 최첨단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을 통한 국토이용효율화 및 환경보호로 구미시 산업발전 및 도시기능을 강화하여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일익을 담당코저 환경기초시설(폐기물처리시설)을 설치하기 위하여

구미 도시관리계획 [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(변경)결정] 변경결정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제안하게 되었음.

2. 주요내용

□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

- 사업의 명칭 : 환경기초시설(폐기물처리시설) 조성 공사
- 위치 : 구미시 산동면 백현리 산 192-1번지 일원
- 용도지역 : 관리지역, 농림지역
- 사업내용 : 사업장(일반) 및 지정폐기물 매립장 조성
- 폐기물처리용량 - 사업장(지정)폐기물: 36,000m³
- 사업장(일반)폐기물: 1,298,000m³
-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주요 내용
 - 가. 용도지역 변경
농림지역, 관리지역 → 계획관리지역
 - 나. 도시계획시설결정
폐기물처리시설 : 160,260m²

□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

• 용도지역결정(변경)

구 분	면 적 (㎡)			구성비(%)	비 고
	기 정	변 경	변 경 후		
합 계	160,260		160,260	100.0	
관 리 지 역	117,006	감)117,006	—	100.0	
계획관리지역	—	증)160,260	160,260	100.0	
농 립 지 역	43,254	감)43,254	—	—	

• 폐기물처리시설 결정(변경)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 적 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신설	⑤	폐기물 처리시설	사업장(일반) 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매립장	구미시 산동면 백현리 산192-1번지 일원	—	증) 160,260	160,260	—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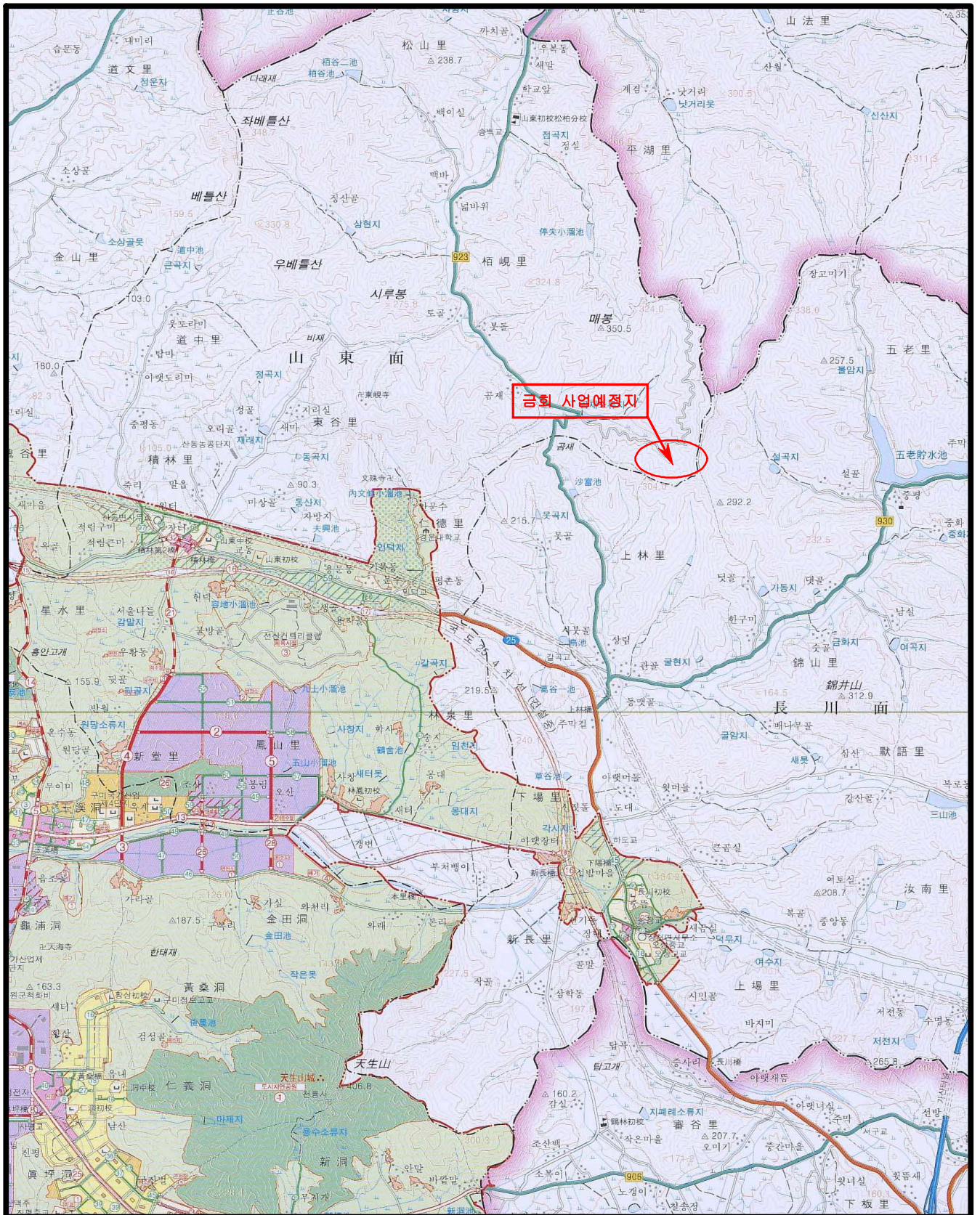
3. 붙 임

1) 위 치 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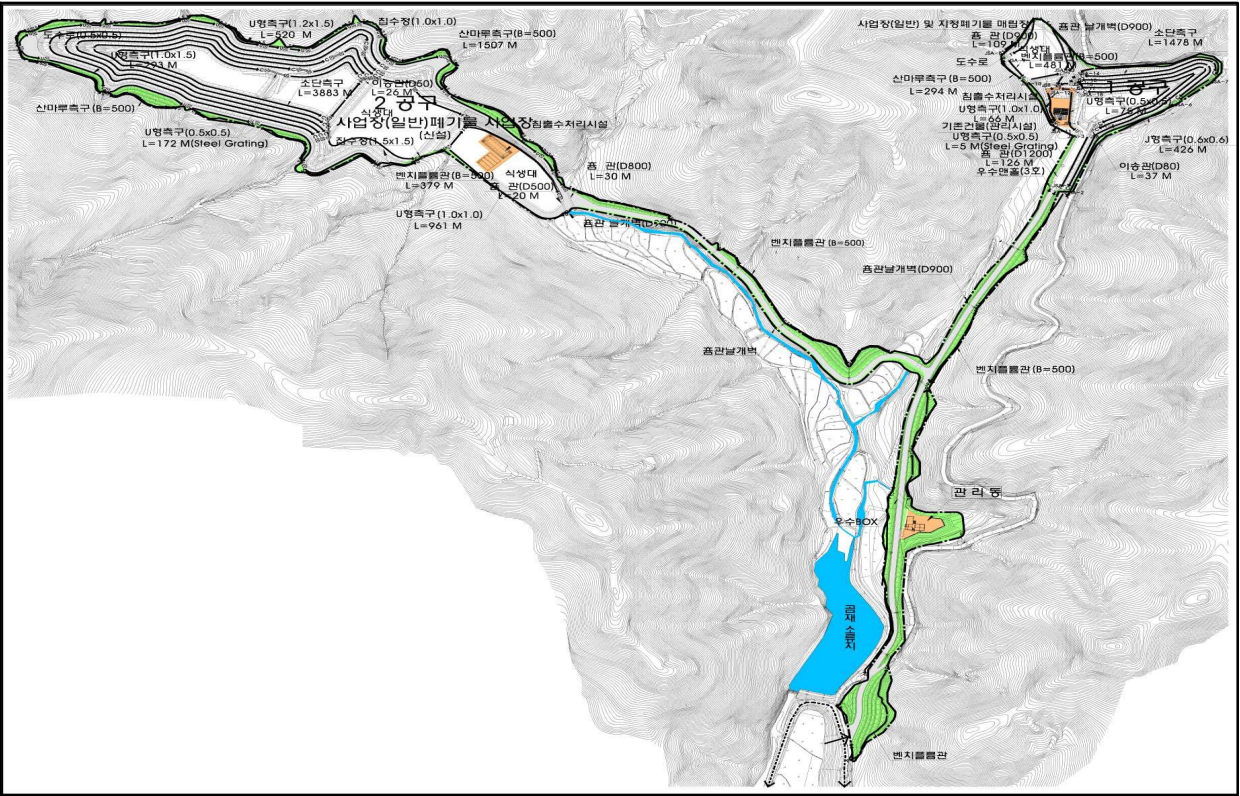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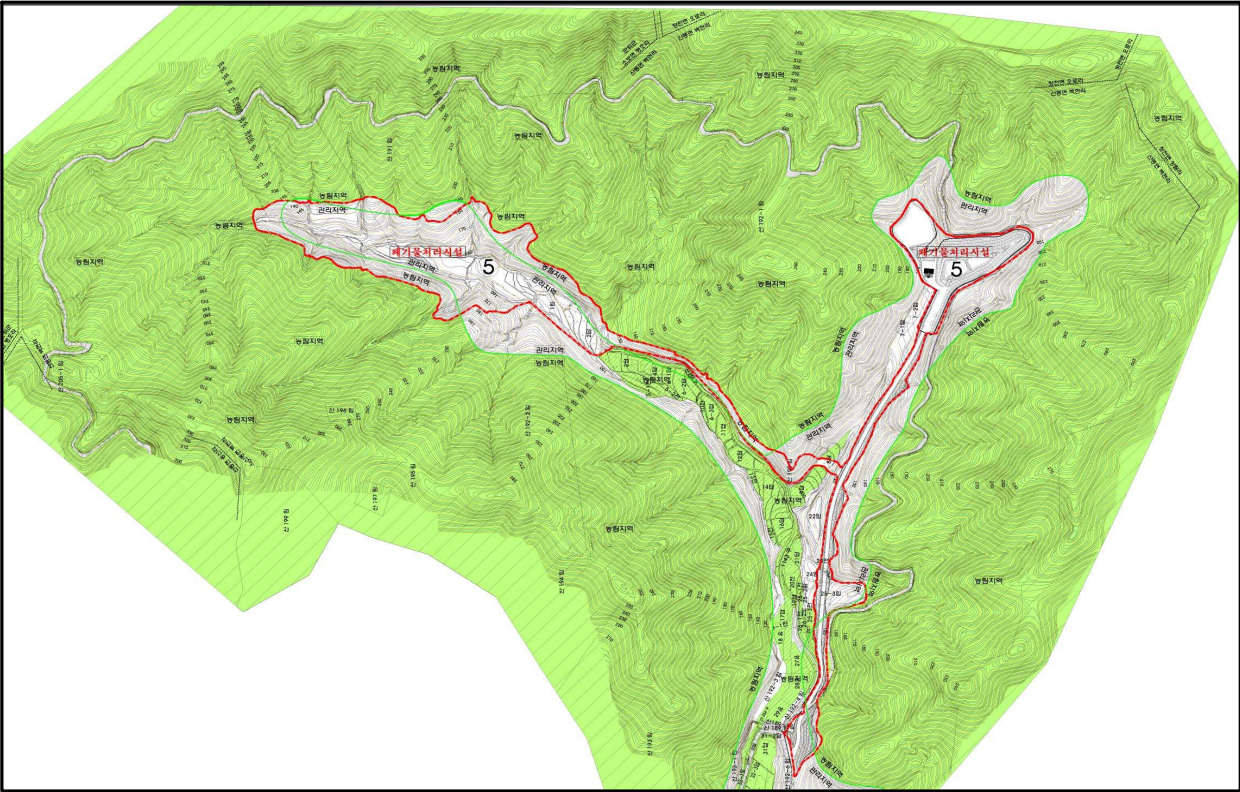
2) 현 황 도

3) 참고 자료

1) 위치도



2) 현 황 도



국내최대내륙 공업단지인 구미시 지역 산업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사업장(일반) 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최종처리시설 조성 및 국내최초 “침출수무방류” 매립방법을 선택하여 구미지역 및 도시세력권내 폐기물 처리를 원활히하여 산업발전에 따른 도시기능 강화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코저함.

구 분	면 적 (㎡)			구성비(%)	비 고
	기 정	변 경	변 경 후		
합 계	160,260		160,260	100.0	
관 리 지 역	117,006	감)117,006		100.0	
계획관리지역	—	증)160,260	160,260	100.0	
농 립 지 역	43,254	감)43,254	—	—	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 적 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 경	변경후		
신설	⑤	폐기물 처리시설	사업장(일반) 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매립장	구미시 산동면 백현리 산192-1번지 일원	—	증) 160,260	160,260	—	

- 사 업 명 : 환경기초시설(폐기물처리시설) 조성 공사
- 위 치 : 구미시 산동면 백현리 산192-1번지 일원
- 사 업 내 용 : 사업장(일반) 및 지정폐기물 매립장 조성
- 사 업 비 : 150억원
- 사업시행자 : (주)케이엠그린 대표이사 김 남 철
- 사 업 기 간 : 2007년 허가일로부터 ~ 2016년 12월 31일

3) 참고자료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」

제28조 (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)

①건설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,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. 다만,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(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것에 한한다)이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24조제5항 및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청취의 기한을 명시하여 도시관리계획안을 관계 특별시장·광역시장·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안을 송부받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시장 또는 군수는 명시된 기한 이내에 당해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⑤건설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⑥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주민"은 "지방의회"로 본다.